

##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전문투자자사용)

201[ ]년 [ ]월 [ ]일

고객 : \_\_\_\_\_

회사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고객과 회사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201[ ]년 [ ]월 [ ]일 효력이 발생한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되는 거래로 인하여 고객이 현재 및 장래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관련 비용 및 기타 부채채무를 모두 포함하며, 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변제할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위 전문과 제1조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기본계약서 제1조에 정한 정의를 따르기로 한다.

1. “가치산정인”이라 함은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의 가치 및 담보물의 수익 등을 산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말도록 한다.
2. “귀책당사자”라 함은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당사자를 말한다.
3. “기본담보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제공담보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한 보증금 금액 또는 근질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5. “담보물”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를 위하여 제공한 보증금 또는 근질권을 설정한 적격담보물을 말한다. 또한, “담보물(의) 제공”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담보물(의) 반환” 또는 “담보물을 반환한다”라 함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 또는 적격담보물에 설정된 근질권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보물의 수익”이라 함은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에 부수하는 이자·수익, 수

- 익권, 특별이자, 장려금, 배당금, 상환금, 지연배상금과 무상주식 등 적격담보물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과실(果實)을 말한다.
7. “담보필요액”이라 함은 회사의 위험노출액에 고객에 대한 기본담보액을 가산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당사자”라 함은 고객 또는 회사를 말하며, 그 중의 일방을 “일방 당사자”, 그의 상대방을 “상대방 당사자”라 하고, 양 당사자를 모두 합쳐 “당사자들”이라 부른다.
  9. “대체담보물”이라 함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10. “반환담보액”이라 함은 기제공담보액이 담보필요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 이행하여야 할 담보물 반환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11. “보증금”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로 표시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2. “신용한도액”이라 함은 제15조 제3호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제공의무를 면하여 주는 금액을 말한다.
  13. “예탁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3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14. “위험노출액”이라 함은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되는 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상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평가일, 평가시간으로 지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제15조 제12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최종청산잔액을 말한다.
  15. “적격담보물”이라 함은 제15조 제6호에서 기재한 통화, 증권, 채권(債權) 등을 말한다.
  16. “최소이전금액”이라 함은 제15조 제4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담보물의 제공의무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17. “추가담보필요액”이라 함은 담보필요액이 기제공담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고객이 회사에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담보물의 가치를 말한다.
  18. “통지시한”이라 함은 오후 [ ]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19. “투자자계좌부”라 함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회원인 예탁자가 작성, 비치하는 장부를 말한다.
  20. “평가시간”이라 함은 오후 [ ]시(서울 시간)를 의미한다.
  21. “평가일”이라 함은 제15조 제5호에서 명시된 의미를 갖는다.

## 제2조 본 계약서와 기본계약서 등과의 관계

- ① 본 계약서와 당사자간에 체결한 기본계약서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② 제15조와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3조 담보물의 제공 및 근질권의 효력범위**

- ① 고객은 제4조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적격담보물에 관하여 회사를 1순위 근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의 설정 및 대항요건 구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i)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직후(늦어도 당일 이내) 본건 수익권증서에 본 계약에 따른 질권 설정내용을 기재하여, 회사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하며, (ii) 본 계약 체결 즉시 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등 설정 및 대항요건 구비를 위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본 계약 체결로 질권설정에 대하여 고객이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됨). 회사도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근질권 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근질권의 효력은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의 수익에도 미치며,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등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제4조에 따라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에 근질권을 설정 또는 해지할 때마다 고객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근질권의 목적이 된 담보물을 기재한 첨부 1 양식의 담보물 목록을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근질권이 예탁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SAFE 시스템에서 해당 근질권의 설정 내역의 출력으로써, 투자자계좌부상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자계좌부를 관리하는 예탁자가 제공하는 전산자료의 출력으로써 각각 고객으로부터 위 담보물 목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고객은 이러한 방식의 담보물 목록 제공 간주에 동의한다.
- ④ 당사자들은,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도, 아래 제4조 제4항에 따라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이 회사에게 인도, 교부 또는 지급되는 시점에 당사자의 해당 담보물에 관한 근질권 설정의사가 교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 ① 평가일의 추가담보필요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회사가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제공 요구를 고객에게 통지시 한까지 통지하면 고객은 그 통지일부터 1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게 추가담보필요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통지된다면 통지일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한다.

- ② 평가일의 반환담보액이 최소이전금액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의 반환 요구를 통지시한까지 통지하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담보액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만약 위 통지가 통지시한 이후에 회사에게 통지된다면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위 담보물을 반환하기로 한다.
- ③ 보증금의 지급이나 반환은 제15조 제7호에 기재한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행한다.
- ④ 제15조 제8호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부기함으로써 근질권이 설정되는 담보물: 해당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근질물인 뜻과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그러한 기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근질권을 해지하는 방법
  - 2. 예금반환채권: 회사가 고객의 예금계좌가 설정된 은행으로부터 첨부 2와 동일한 취지의, 확정일자가 날인된 예금 근질권 설정 승낙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한 후,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회사의 동의 하에 고객이 해당 예금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
  - 3. 기타 담보물: 본 계약서 제15조 제8호에서 정하는 방법

### 제5조 선행조건

본 계약서에 의한 당사자의 의무는 다음 각호의 선행조건을 전제로 성립한다.

- 1.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기간의 경과나 통지 등에 의하여 귀책거래종료사유에 이를 수 있는 잠재적인 사유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 개별거래에 대하여 기본계약서 제8조에서 정한 기한전 거래종료일이 도래하였거나 유효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 3. 제15조 제9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 제6조 가치산정

- ①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위험노출액의 산정은 기본계약서 제9조 제2항의 최종청산잔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일 및 평가시간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 ②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담보물의 가치산정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따라 평가일을 기준으로 가치산정인이 계산한다.
1. 현금(보증금): 대한민국 원화인 경우 해당 금액,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주식회사에서 평가일 당일 최초로 고시하는 해당 통화와 원화간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전한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2. 채권: 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복수의 채권평가기관이 평가일 당일에 산출한 채권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3. 예금반환채권: 해지시 인출가능금액(단, 대한민국 원화 외의 통화인 경우에는 위 제1호를 준용한다)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4. 기타 담보물: 제15조 제10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제15조 제6호의 해당 평가율을 곱한 금액
- ③ 가치산정인은 해당 평가일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가치산정에 대한 분쟁 해결

- ① 당사자 중 가치산정인이 산정한 위험노출액, 담보필요액, 담보물이나 담보물의 수익의 가치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가치산정인으로부터 제6조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이의의 내용을 가치산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본 계약서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반환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시한 내에 분쟁의 여지가 없는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분쟁이 있는 경우 가치산정인은 양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제3의 가치산정인(단,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을 매매 또는 중개할 인가를 취득한 자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일 및 평가시를 기준으로 재계산을 의뢰하고, 재계산을 한 날의 다음 영업일의 통지시한까지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재계산의 방법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각 당사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으면 그 재산정 결과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 담보물의 교환

-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영업일 중 통지시한 내에 통지로서 자신이 제공한 담보물의

- 교환을 요청하고,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음으로써 담보물을 교환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을 교환할 때에는 회사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기 제공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적격담보물(이하 “대체담보물”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대체담보물 수령일의 다음 영업일의 제공 시한까지 가치산정인이 계산한 대체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고객이 지정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대체담보물을 회사에게 제공한 후, 그 대체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하자로 인하여 회사가 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명의 및 이익의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된 때에는 고객은 그 대체담보물을 하자가 없는 다른 적격담보물로 교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 담보물의 관리 및 사용 등

- ① 회사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자산에 대하여 행하는 관리수준에 상당하는 주의를 기울여 담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수익의 수령이나 담보권에 부수된 권리의 강화나 보존을 위한 일체의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③ 제15조 제11호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보증금 이외의 회사가 보관 중인 근질권이 설정된 담보물을 전질(轉質)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 ④ 제15조 제11호에 의하여 회사가 담보물을 전질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본 계약서에 따른 담보물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전질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하며, 회사는 모든 담보물을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담보물의 수익이 부가되었다면 그것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가 담보물의 수익을 수령하거나 제4항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고객이 당해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회사는 고객에 대한 추가담보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보증금이 미달러화인 경우 보증금 지급일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에서 공표하는 연방기준금리(federal funds overnight rate)를 보증금액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
  2. 현금배당, 이자 및 단주대금 등: 배당금, 이자 또는 단주대금 각각의 지급일에 고객에게 반환
  3. 주식배당 및 무상주식: 당해 주식 상장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
  4. 기타 담보물의 수익: 제15조 제12호에서 정하는 방법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경우에는 제15조 제13호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에 대하여 제10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본계약서 제9조에 의한 기한전 거래종료시의 정산시까지 거절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수익을 그러한 정산의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다.

### 제10조 귀책거래종료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계약서 제6조 제4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1. 당사자가 담보물의 제공 또는 반환,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불이행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 영업일 이내에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2.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압류, 체납처분, 경매개시, 강제집행 기타 유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그러한 사유가 취소 또는 해제되지 않거나 고객이 회사에게 제8조에 따라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담보물과 동등한 가치 이상의 대체담보물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3.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통지하거나 의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4. 당사자가 제1호의 의무 이외에 본 계약서에 의한 다른 의무를 불이행하고 해당 불이행 사실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제15조 제14호에서 정한 귀책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 담보물 등의 처분

- ① 기본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귀책거래종료사유나 기본계약서 제7조에 의한 기타 거래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회사에게 본 계약서 및 기본계약서에 의한 지급의무가 있는 때에는 거래의 기한 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기본계약서 제9조 제3항에 따른 최종청산잔액의 지급일의 다음 영업일에 담보물 또는 담보물의 수익(총칭하여 이하 “담보물 등”이라 한다)을 처분하여 고객의 지급의무에 충당하거나 담보물 등을 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취득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는 경우 당해 처분 또는 취득 전까지 그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 ③ 본 계약서 제15조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보증금 또는 예금반환채권: 회사의 보증금 취득 및 질권의 행사에 의한 반환되는 예금의 수령
2. 증권: 공개시장에서의 매도, 제3의 중개기관을 통한 처분 등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한 매도
3. 기타 담보물 등: 제15조 제15호에서 정하는 방법
- ④ 담보물 등의 처분 또는 취득 대금은 고객의 회사에 대한 피담보채무 중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담보물 등을 처분 또는 취득하여 고객의 지급의무를 모두 변제 받은 후에도 남은 담보물 등이 있다면 이를 처분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고객은 담보물 등의 소유권을 회사에게 적극적으로 귀속시키는 방법(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면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의 변제 의무를 해당 귀속일의 담보물의 가치(단,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치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평가율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도에서 면할 수 있다.
-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조치 후에도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 제12조 진술 및 보장사항

고객은 본 계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술하고 그 내용의 진실함을 보장한다. 이러한 진술 및 보장은 담보물의 제공시에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1. 고객은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담보물의 제공 시에 회사는 그 담보물에 대한 어떠한 담보, 권리주장, 부담 또는 제한도 없이 권리, 명의 및 이익을 취득할 것이다.
2. 본 계약서에 의한 계약 및 본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에 관하여 고객은 본 계약서, 기본계약서 및 부속문서에 명시된 진술 이외에는 회사의 어떠한 권고에도 의존하지 않으며, 각 당사자의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본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을 하며, 본 계약의 체결에 다른 위험을 이해하고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의사가 있다.

### 제13조 비용

- ① 각 당사자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서에 의한 의무 이행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다른 당사자에 의해서 발생한 어떠한 비용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② 고객은 회사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담보물에 대해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세금 및 수수료를 그 기한 내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제11조 제1항에 의한 담보물 등의 처분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귀책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균등 부담하도록 한다.

#### 제14조 기타

- ① 회사가 고객에게 담보물 등의 반환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전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실제 이전한 날까지 해당 담보물 등을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연 [ ]%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 ② 본 계약서에 의한 모든 통지는 제15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서 제15조에 따른다.
- ③ 회사에게 제공된 담보물에 대하여 어떠한 소송, 보전처분 등의 조치로 인하여 회사의 권리행사의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은 회사에 인도한 담보증서(통장)가 불가항력·사변·재해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분실·손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통장)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담보증서(통장)·담보물수령증(통장) 등의 증서상의 인영·서명을 고객이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증서 등과 인감·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며, 고객은 증서의 기대문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 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담보물이 증권인 경우 고객은 그 증권에 관한 상환공고·제출공고 등에 유의하고, 이들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곧 회사에게 통지하며, 고객이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증권의 추심이나 기타의 권리행사 또는 보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고객이 부담한다.
- ⑦ 본 계약서상 어느 조항이 무효이거나 집행불가능 하더라도 이는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하다.

[이하 제15조 선택사항]

**제15조 선택사항**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하며, 만일 본 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본 조의 조항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기로 한다(기재 또는 서명/날인이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제1조 제1호의 가치산정인은 회사가 말도록 한다.

가치산정인 : \_\_\_\_\_

2. 제1조 제3호의 고객의 기본담보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3. 제1조 제12호의 고객의 신용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4. 제1조 제16호의 고객의 최소이전금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5. 제1조 제21호의 평가일은 다음 유형 중으로 한다. 다만, 해당 평가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평가일을顺延한다

평가주기	선택
일일평가형: 담보물을 매일 평가한다.	
주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주 _____ 요일에 평가한다.	
월간평가형: 담보물을 매월 _____ 일에 평가한다	
기타형_____	

6. 제3조 제1항의 보증금 및 적격담보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종 류		평가율
보증금	원화	100%
	외화 (통화명: _____)	
예금반환채권	원화	100%

	외화 (통화명: _____)	
채권	대한민국 국채	
주식		
기타 증권		
기타 담보물		

7.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보증금의 제공방법은 다음의 각 계좌에 대한 자금이체의 방법으로 한다.

용도	개설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회사에 보증금을 제공하는 계좌			
고객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계좌			

8. 제4조 제4항에서 정한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은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적격담보물	담보물의 제공 및 반환 방법

9.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특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_\_\_\_\_

10. 제6조 제2항 제4호의 기타 담보물의 가치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11. 다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다면, 전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고객은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물을 전질(민법 제343조의 승낙전질을 의미함)하는 것을 승낙함	(인)
---	-----

12. 제9조 제5항 제5호의 기타 담보물의 수익의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13. 제9조 제6항의 현금 이외의 담보물의 수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_\_\_\_\_

14. 제10조 제5호의 귀책거래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한다.

---

15. 제11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담보물 등의 처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6. [기타 특약사항]

---

[이하 서명페이지]

본 계약의 증거로써 각 당사자는 아래에 명시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서의 첫 페이지에 명시된 날짜부터 본 계약서가 효력을 갖는데 동의한다.

고 객

성명 또는 법인명: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사소재지) :

날 짜 :

회 사

회 사 명 :

(날인 또는 서명)

주소(본점소재지) :

날 짜 :

[3-1]

[첨부 1]

### 담보물 목록

일 자: 201[ ]년 [ ]월 [ ]일

위 기재일자 현재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담보물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내 용
예금반환채권	원화	
	외화	
채권	대한민국 국채	
주식		
기타 증권		
기타 담보물		

\_\_\_\_\_ (인)

성명 :

직위 :

[3-2]

[첨부 2]

## 예금 근질권 설정 승낙서

일 자: 201[ ]년 [ ]월 [ ]일

수 신: \_\_\_\_\_

제 목: 예금근질권 설정에 대한 승낙

1. 당행은, 이 승낙서에 의하여, \_\_\_\_\_(“질권설정자”)와 \_\_\_\_\_(“질권자”) 사이에 20\_\_년 \_\_월 \_\_일 체결된 장외파생상품거래 담보계약서에 의거, 질권설정자가 그 명의의 별첨1 기재 예금계좌(“입질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당행에 갖는 예금반환채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이익(“입질채권”)에 관하여, 질권자를 위한 1순위 근질권(“본건 근질권”)을 설정함을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합니다.
2. 당행은 이 승낙 이후에 질권설정자가 수시로 입질계좌에 입금한 모든 금원에 대하여 본건 근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건 근질권이 해지되었다는 질권자의 서면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질권자의 지시 없이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예금의 인출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당행은 질권자가, 당행에 대하여 본건 근질권을 실행함을 통지한 경우, 질권자가 질권설정자를 대신하여 입질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입질채권의 반환과 관련하여 당행이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갖는 유치권, 상계권 등 여하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4. 당행은 또한 이 승낙서를 발급하기 전에는 입질계좌에 관한 질권 기타 담보권의 설정 통지 또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바 없고, 질권설정자 외의 제3자가 입질채권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주장한 바 없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 ]은행 [ ]지점

\_\_\_\_\_ (인)

성명 :

직위 :

[확정일자 날인]

[3-3]

[별첨 1]

### 입질계좌의 목록

개설은행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	예금주



